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1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침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1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 / 6

1. 목적

이 지침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임직원의 감염병 이환을 예방하고 공단 시설물 이용자의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 임직원 및 공단 시설물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감염병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감염병을 말한다.

3.2 보호구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를 착용하는 각종 보호장구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이사장(위원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최종 의사결정, 경영상의 지원

4.2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위원장, 안전관리이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 관리:감독 총괄

4.3 안전보건조정관(본부 및 기술원 단·처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중요사항 결정 등 지원

4.4 안전관리전담부서장(안전관리팀장)

갂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실무 총괄 전담부서 업무 수행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1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 / 6	

4.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사장) 및 관리감독자(팀장, 출장소장)

소속직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대책 이행, 본부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이 시행하는 방안 등에 협조

4.6 지역사무소 안전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한 관리감독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청사방역 및 관리감독자 지원

5. 감염병 위기 시 국가 대응체계 및 공단 대응활동

5.1 국가 대응체계

위기수준	위기유형	국가 대응체계
관심 (Blue)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강화
주의 (Yellow)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전국 확산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5.2 공단 대응활동

위기수준	공단 대응활동	비고
ZLAL/DLa)	·각 조직별 비상연락체계 점검 및 가동	전 부서
관심(Blue)	·감염병 관련 국가 지침 또는 자료 수집 및 제공	안전관리팀
주의(Yellow)	·감염병 실무대응반(반장: 안전관리이사) 설치 및 운영	안전관리팀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자료 수집 및 안내 등	간건인다금
경계(Orange)	·감영병대응위원회(본부) 설치 및 운영	안전관리팀
	·감염병 보호구 등 지원 및 업무지속계획 수립·운영	전 부서
심각(Red)	·지역본부, 기술원에 감영병대응위원회 추가 설치 및 운영	안전관리팀
	·감염병 예방 보호구 구매 추가 예산편성 및 지원	조직예산실





자율 지사-KoELSA-11
2023.00.00.
0
3 / 6

6.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조치

6.1 관심 단계

- 1) 관리감독자(실장, 출장소장, 팀장)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가동하여야 한다.
- 2)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감염병과 관련된 정부 지침 또는 자료를 수집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2 주의 단계

- 1)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전담부서원으로 구성되는 감염병 실무대응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감염병 실무대응반은 필요한 경우 정부지침 등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 3)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결근 대비 사업계획, 보호구 수급 등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비상대응조치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부서에 안내하여야 한다.
- 4) 관리감독자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소속직원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이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전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3 경계 단계

- 1)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본부에 공단 감염병대응위원회(별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 2) 공단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정부지침 등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3)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결근 대비 사업계획, 보호구 수급 등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관련부서장에게 요청하고, 관련부서장은 수립 후 지역사무소장과 안전관리전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공단 감염병대응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대응 방안을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교육·지시하여 한다.
- 5)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보호구 등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4 / 6

6.4 심각 단계

- 1)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공단 감염병대응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 지역본부 및 승강기 안전기술원은 별도의 감염병대응반(별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공단 감염병대응위원회은 정부지침 등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대응방 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3)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 임직원의 감염병 관련 뉴스레터 등을 작성하여 전파하여야 한다.
- 4)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보호구 구매에 필요한 예산 등을 파악하여 소관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관부서장은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7. 공단 임직원의 감염병 이환 시 대책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감염병에 이환된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지침 등에 따라 보건당국 및 안전관리전담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공단 임직원에게 감염병 이환자 발생 사실을 즉시 전파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감염병 이환자 발생에 따른 정부지침 준수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감염병 이환자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8. 관련 문서

1) 감염병 대응 조직 설치 및 주요 업무분장(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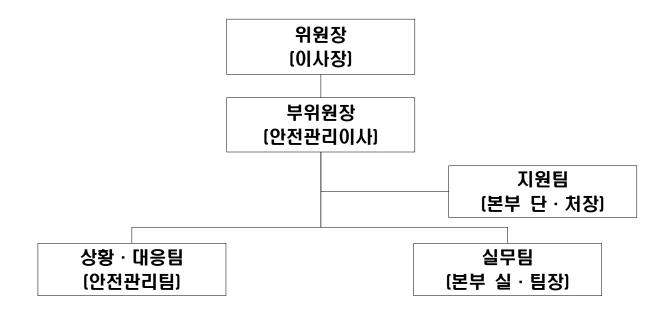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1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5 / 6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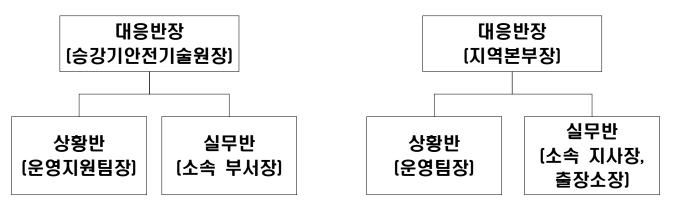
감염병대응조직 설치 및 주요 업무분장

〈1〉 감영병 대응조직

① 공단 감염병대응위원회 (경계단계부터 설치)



② 승강기안전기술원 및 지역본부 감염병대응반 (심각단계 시 설치)



※ 지역본부 감염병대응반의 상황반은 여건에 따라 사업팀장으로 변경 가능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1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6 / 6	

〈2〉 주요 업무분장

① 공단 감염병대응위원회

구 분	주요임무
위원장	•공단 임직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최종 의사결정
(이사장)	•긴급 지원예산 등 경영상의 지원 승인
부위원장	•임직원 행동요령, 대응방안 승인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
(안전관리이사)	관리·감독 총괄
지원팀 (본부 단·처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중요사항 결정 등 지원
상황팀 (안전관리팀장)	•공단 감염병대응위원회 운영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물품 지원 •감염병 대응방안 수립, 이환자 관리 및 대응상황 모니터링·지원
실무팀 (본부 실·팀장)	•각 부서별 소관업무의 지속 운영에 위한 대책 수립·이행 •소속직원 모니터링 및 상황팀에서 요청 또는 시행하는 사항의 이행·협조

② 승강기안전기술원 감염병대응반

구 분	주요임무
대응반장 (기술원장)	•기술원 임직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 관리·감독 총괄
상황팀 (운영지원팀장)	•승강기안전기술원 감염병대응반 운영 •본부 상황팀에서 요청 또는 시행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협조 •자체 감염병 대응방안 수립(필요시), 이환자 관리 및 대응상황 모니터링·지원
실무팀 (소속 부서장)	•각 부서별 소관업무의 지속 운영에 위한 대책 수립·이행 •소속직원 모니터링 및 상황팀에서 요청 또는 시행하는 사항의 이행·협조

③ 지역본부 감염병대응반

구 분	주요임무
대응반장 (지역본부장)	•지역본부 및 소속지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업무 관리·감독 총괄
상황팀 (운영팀장)	•지역본부 감염병대응반 운영 •본부 상황팀에서 요청 또는 시행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협조 •자체 감염병 대응방안 수립(필요시), 이환자 관리 및 대응상황 모니터링·지원
실무팀 (지사장, 출장소장)	•감염병 관련 업무추진 문제점 모니터링 및 상황팀 통보(필요시) •소속직원 모니터링 및 상황팀에서 요청 또는 시행하는 사항의 이행·협조